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등
장애인학대 관련 자원체계 강화〉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8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2 신설 등).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2항제23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관련 사항 추가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 2제2항제6호 및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③ ~ ⑥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한다. 1. ~ 22. (생략) <u><신설></u> ③ ~ ⑧ (생략)	-. 1. ~ 22. (현행과 같음) 23. 그 밖에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 ⑧ (현행과 같음)
--	---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 중에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법정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¹⁾

1)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법정사항을 포괄하여 9대 정책 분야, 30대 중점 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9대 정책 분야는 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 ②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 의료체계 강화, ③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④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⑤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⑦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⑧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⑨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임.

□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정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전 부처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행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의 9대 정책 분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30대 중점과제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가 별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종합계획 법정사항 중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에 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²⁾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개정안에서 인용된 조항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복지,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의됨.

이는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이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 종사 기관(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과도 일부 중복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 구체화를 위임하는 것은 법치행정주의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2.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및 위원 제척 규정 마련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9조의20(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회복지원과 자립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이하 “<u>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u>”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피해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별피해회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피해장애인 관련 자료 공유 및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u>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의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신 설>

한다.

1. 피해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2.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중 피해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1(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위원의 제척) ①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위원은 자신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제59조의20제2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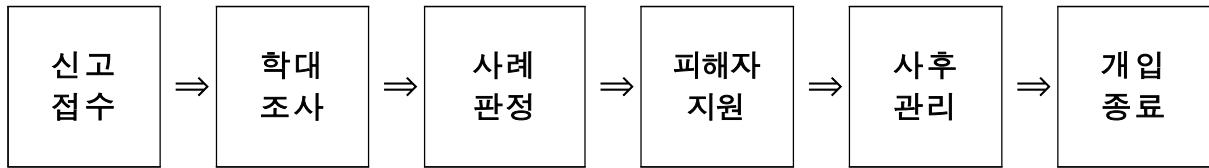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이하 “제척위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u>제척위원이 속한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위원 중 제척위원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접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제59조의2제2항의 심의·의결에 참석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대신할 위원이 없는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에 속한 위원 중 제척위원이 속한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이 대신하여 참석한다.</u>
--	--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5년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피해자 지원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³⁾

3) 학대피해장애인과 관련한 시설로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이 있으나, 이상의 시설은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일시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의 성격이 강함.

<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해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장애인쉼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⁴⁾

□ 그러나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불명확하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예산·인력·지원기관 수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⁵⁾

- 특히 장애인학대사건을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에만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 지원은 단편적

-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호선, 송남영, & 정한별. (202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1-63.

이고 불충분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⁶⁾

□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학대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른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와 그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위원장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⁷⁾

6) 김영연. (202.12.21.). 법무부·복지부,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 제정 필요성 한목소리. 함께결음.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_2&wr_id=170).

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분야 과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 **세종특별자치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협의회에 지자체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적합치 않음, **충청남도**: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부합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및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비교 >

구분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위원: 시·군·구의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위원장: 외부 전문가 중 호선 ○부위원장: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위원: 장애인복지, 법률, 의료 분야의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경찰 등 관계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권익옹호분야 경험을 갖고 있는 활동가 등
주요기능	○피해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별피해회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피해장애인 관련 자료 공유 및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의·의결	○장애인 학대여부 판정 ○이의제기건에 대한 재판정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의료·법률·복지서비스 등 전문분야에 대한 조언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한편, 개정안에서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동협의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중립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 안전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행할 수 있는 기피 신청 및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회피에 관한 규정도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 개정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행사 및 홍보 실시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2).

현행	개정안
<신설>	제59조의22(장애인학대예방의 날) ① <u>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예방의 날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6월 22일로 정한 이유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인화학교 학생 성폭력 피해 최초 상담이

이루졌던 2005년 6월 22일⁸⁾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⁹⁾가 마련된 날(2015년 6월 22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기념일로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지정되어 있음.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크거나

8) 이 사건은 후에 ‘도가니’라는 제목으로 소설 및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
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
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관련 사항 추가(수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수정수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통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신속개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
- 다만,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서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으로 수정할 필요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신중검토)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현행 법률에서 정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역할과 중복이 우려됨

☐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수용)

나.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및 ‘장애인학대예방주간’에 대

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필요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기념일의 지정기준 참고

□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도 면밀 검토 필요

※ 장애인의 날(4.20.) 및 장애인 주간(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 / 「장애인복지법」

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의무자 확대 관련: 신중검토

- 장애인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해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경우 종사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과 같은 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신고의무자 확대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직군이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고의무자의 확대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 및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개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관련: 신중검토

- 장애인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 및 판정과 함께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과 자립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 동의함
- 다만, 개정안 제59조의2제2항1호는 모든 피해장애인의 지원계획을 통합지원협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피해장애인의 지원계획을 해당 협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제50조의2제2항1호를 "장애인의 학대피해가 특수하고 복합적이어서 다양한 전문기관 또는 장애인단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례에 대한 개인별피해회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라.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해장애인의 직접적인 지원은 도 단위가 아니라 각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복지관 등의 기관과 장애인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의 설치 단위 중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로 변경할 필요
- 모든 피해장애인의 사례를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학대피해가 특수하고 복합적이어서 다양한 전문기관 또는 장애인단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한정할 필요

마. 전라북도특별자치도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위원장을 각 시도별 도지사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역할은 강화되겠으나, 개최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업무의 숙지도가 높고 업무 연찬도 수시로 가능해야 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분야 과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바. 세종특별자치시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역할은 이미 운영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피해 장애인 대책협의회에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적합치 않음.
- 사후 지원역할에 대해서도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대 판정 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자문이나 지자체 관리부서에 전달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에 매우 중복된 업무로 볼 수 있음.
- 사후 지원역할에 대한 보완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침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사. 충청남도

-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회의 의장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지방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정하기 보다는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정하는 것이 학대 장애인 개인별 지원 등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부합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 경기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의회는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운영하기보다는 학대전담기관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학대대응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법령 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운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에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추가

문 의 처
02)6788-5502